

품목등록제 도입 지적재산권 보호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국내농약산업 발전 및 농약안전성 강화 기대

여인홍

농림수산부 환경농업과

개정배경

농약은 농작물 재배에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농업자재로서 우리나라가 주곡을 자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식용농산물오염 등 농약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이며 UN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주축으로 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위해농약의 사용규제, 생산중단 등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농약안전성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약안전성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국제조류에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현행 농약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19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심

의·의결된 개정 농약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첫째, 농약의 품목고시제를 폐지

하고 품목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농약관리체계의 기본골격은 정부에서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한 농약에 대하여 이를 고시하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업체는 어떤 업체라도 고시된 농약을 등록한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약의 품목고시제」이다.

이 제도는 농약제조업체가 농약 개발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정부가 고시한 농약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제도이며, 동일 농약을 여러 업체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의 주소비자인 농민에게도 좀 더 값싸게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품목고시제」에서는 특

정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약의 안전성자료를 정부주도로 공동재산화 하므로써 특정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농약업체가 농약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되어 국내농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며, 품목고시시험을 신청한 업체 이외의 업체가 고시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원 개발업체의 농약원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품원제를 사용하고 있어 농약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법에서는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농약의 품목별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등록토록 하는 「품목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성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업체만이 농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품목등록제」도입으로 농약의 안전성 시험성적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어 농약개발 등 농약에 대한 업체의 연구개발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내농약산업의 발전을 유

도하고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법에서는 농약의 품목등록 신청시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별 전문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등록된 농약이 사용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의 등록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10년마다 재등록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새로운 과학기술 등에 의해 농약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및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는 생장조정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미생물, 나무의 수액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약제 등이 출현하고 있으며 용도도 병해충을 죽이는데만 국한하지 않고 병해충이 농작물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물질에 대하여도 품질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법에서 농림수산부령으로 새로운 형태의 약제를 농약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발달로 새롭게 등장할 약제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농약관리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이 담당하던 농약관리업무를 농약안전성 관리분야의 전문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농약관리업무를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유해농약 수출시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FAO에서는 유해한 농약이 아무런 제한없이 교역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는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상대국에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구한 후 수출하도록 하는 유해농약수출 사전동의제(PIC: Prior Informed Consent)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유해농약수출시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PIC제도의 도입을 대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품목고시제」하에서 필요하였던 농약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허가제에

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농약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기대 및 전망

개정법은 '96년 12월중에 시행될 계획이며 이의 시행을 위해 '96년 상반기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약의 「품목등록제」가 시행되면 농약의 주사용자인 농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등록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 좋은 농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안전한 농약이 공급되어 식용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국민건강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약산업이 처한 현 상황이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기에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 농약업체와 연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농약의 안전성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의 육성 등 농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농약정보**